



전남대학교



수신자 농식품생명화학부장
(경유)

제목 산업대학원 학과내규 개정 승인 통보(식품·외식산업학과)

1. 산업대학원-295(2019.2.1.)호의 이첩입니다.
2. 산업대학원 학과내규 개정 승인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학과(전공)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주요 내용 ▣

학과	구분	승인 내용	비고
산업대학원 식품·외식산업학과	학과내규 개정	· 학과이수 필수과목 및 종합시험과목에 대한 내규 개정	

- 붙임 1. 학과내규 개정(안) 1부.
2. 제217차 산업대학원위원회 회의록 1부. 끝.

농업생명과학대학장



직원

이정미

부학장

2019.02.07.

김성길

협조자

시 행 친환경농업학과-32 (2019.02.07.) 접 수 농식품생명화학부-248 (2019.02.07.)

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(용봉동, 전남대학교)

/ <http://www.jnu.ac.kr>

전화번호 062-530-2006 팩스번호 1

/ Jmlee@chonnam.ac.kr

/ 공개

산업대학원 식품·외식산업학과 내규 개정(안)

1. 주요내용

- 1) 식품·외식산업학과 내규 개정

2. 개정사유

- 1) 필수과목과 종합시험과목에 대한 내규 개정

산업대학원 식품·외식산업학과 내규 신규 대비표

규정 항목	구	신
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	학과(전공)에서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. (식품및차가공학특론(3)), (식품및차미생물학특론(3)), (식품및차기능학(3)), (식품및차화학특론(3)), (식품공학특론(3))	학과(전공)에서 이수해야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. (수정)1. 식품가공학특론 2. 식품미생물학특론 3. 식품기능학 4. 식품화학특론 5. 식품공학특론
⑦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	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험 과목수는 (5)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. (식품및차가공학특론(3)), (식품및차미생물학특론(3)), (식품및차기능학(3)), (식품및차화학특론(3)), (식품공학특론(3))	(수정)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3분야로 하며 시험은 각 분야 당 1과목씩 총 3과목으로 한다. ①식품공학, 식품가공학 ②식품기능학, 식품화학 ③식품미생물학 식품생물공학
⑪부칙조항		(추가)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는 승인일 기준 제적생(재학, 휴학, 수료) 모두에게 적용한다.

식품·외식산업학과 학과내규 전문

□ 학과명 : 식품·외식산업학과

규정 항목	내 용
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	-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. 다만 학점이수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. -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②보충과목의 지정과 학점의 범위	보충과목의 이수 대상자 및 총 이수학점과 이수과목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③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	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학점은 학과(전공)의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
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	학과(전공)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. 1. 식품가공학특론 2. 식품미생물학특론 3. 식품기능학 4. 식품화학특론 5. 식품공학특론
⑤교수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과목수	학과(전공)교수가 한 학년에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은 1과목 이하로 한다.
⑥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	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원(연구과정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⑦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	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3분야로 하며 시험은 각 분야당 1과목씩 총 3과목으로 한다. ①식품공학, 식품가공학 ②식품기능학, 식품화학 ③식품미생물학, 식품생물공학
⑧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	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만일,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.
⑨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	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.
⑩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	기타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⑪부칙조항	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는 승인일 기준 제적생(재학, 휴학, 수료) 모두에게 적용한다.